HOBAN
SUMMIT
고덕신도시 II

평택 고덕신도시 A-43블록 호반써밋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현재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견본 빠빠 I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으로만(http://pt2d2-hoban.co.kr/) 동시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 사전예약은 선착순으로 운영 상황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 및 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약 방법 및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문의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모델하우스 관람 방법 변경 등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당첨자 세종특별자치시 견본주택 방문 불가할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통한 방문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금융결제으로 인한 방문은 당첨자 본인 1인만 감당 가능하며,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감당 가능)
- 홈페이지 방문 시에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이용 권장 당첨자 제한 없음.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치등록 제한 계획 예정임을 공지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 넘을 경우
- 현재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모델 빠빠 II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66-0399) 등을 통해 임대주택공고문과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로 상담 지연이 다량이 발생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정확 안내 오기 하여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공식홈페이지 공고문 및 견본주택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지 않은 정보로 인한 상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체결 시 문제 발생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상담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6.18.입니다. (단지 지역조건이 가.지역, 나.기타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판단기준일 임)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수도권외지역제외", 수도권외지역제외 "경기도 이외 지역" 전매제한 적용 민영주택입니다. 청약 및 계약 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청약 1순위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지역 지역우선 공급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입니다. 당첨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전까지 유효한 청약통장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해당 청약통장 해지 및 재가입 불가합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8.)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마목 "수도권 외 지역 중 시·군의 행정구역 전부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또는 「주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입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마목 "수도권 외 지역 중 시·군의 행정구역 전부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또는 「주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지역 지역우선 공급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